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973호
2. 발 의 자 : 신복자 의원 등 27명
3. 발의일자 : 2024년 08월 05일
4. 회부일자 : 2024년 08월 14일

Ⅱ. 제안이유

○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업소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동참업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.

○ 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고,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·운영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○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을 보완함(안 제3조제1호, 제3호 및 제5호)

○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제1항 및 2항)

Ⅳ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·추가하고, ‘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’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됨.

2.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

○ 정부(행정안전부)와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·운영하고 있음.

○ 2023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물가 및 내수부진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“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“을 개정(2023.8.)하여 지정기준과 지정 시기 등을 정비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이용을 독려함.

○ 그리고 서울시도 「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23.5.22.)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바, 금년 5월 기준으로 총 1,73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·운영되고 있음.

<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 >

(2025. 5월 기준, 단위 : 개소)

계	외식업						기타 개인 서비스업				
	소계	한식	일식	중식	양식	기타	소계	세탁업	아미용업	숙박업	기타
1,730	1,219	906	34	96	38	145	511	57	382	1	71

○ 참고로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▸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, ▸우수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[1]을 추진하고 있음.

3.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용어(표찰)와 사업(필요물품 지원, 판촉 및 홍보활동)을 관련 지침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▸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(안 제3조제3항), ▸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4조)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)서울특별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) ----------.
1. "착한가격업소" 표지판	1. ---------- 표찰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종량제·쓰레기봉투 지원	3.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4조(이용 활성화) <신 설>	제4조(이용 활성화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"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"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"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" 지정·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(생 략)	③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1) 관내 착한가격업소 중 우수업소 35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(업소당 400만원)하는 사업으로, 2025년 하반기 추진 예정임.

○ 먼저 동 개정조례안은 ▸표찰 교부, ▸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지원, ▸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등의 현재 시행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.

< 착한가격업소 직접지원 사업개요 >

▸사업목적 :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
▸지정대상 :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요금(116종)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
▸지원내용
- (지원규모) 업소당 100만원
- (지원내용) 표찰 교부, 업소별 맞춤 물품지원,소규모 시설개선 지원
- (홍보) 서울pay 앱 착한가격업소 신청배너 설치, 홍보 리플릿 배포

▸관리점검 : 자치구 일제정비 및 수시정비(월1회)
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행안부 홈페이지 연동하여 정보 일원화

<표찰>

○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과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다양화하고 있음.

○ 참고로 상·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은 현재 지원 규모 내(업소당 100만원)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러한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은 17개 시·도 대부분에서 조례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고,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17개 시도 사례 >

연번	시도	공공요금 지원	이용의날 지정	연번	시도	공공요금 지원	이용의날 지정	연번	시도	공공요금 지원	이용의날 지정
1	서울	X	X	7	울산	X	○	13	전북	○	○
2	부산	X	○	8	세종	○	○	14	전남	○	○
3	대구	○	○	9	경기	○	X	15	경북	○	○
4	인천	X	○	10	강원	○	○	16	경남	○	○
5	광주	○	○	11	충북	○	○	17	제주	○	○
6	대전	X	○	12	충남	○	○	-			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